

기안용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금수 445- <i>46</i>	(전화번호 323)	전 话: 규정	조 향 전결사항
처리기간			시 징	<i>018-1</i>
시생일자	85. 1.			
보존연한			<i>2.3</i>	
보 조 기 관	부 시 장 상하수국장 급수과장	기획관리실장 건설관리국장 민방위국장	주무과장 업무 계장 배수 계장 조수 방지 계장	부서별로 각각 부과되는 일정과 건축 지도 과장
기안책임자	조광자 <i>1985. 1.</i>			
경 우 수 신 참 조	각 안 참 조		발 신	1985. 2. 04 <i>1985. 2. 04</i>
제 목	급수공사 정액공사비 및 저수조 설치기준 조정			
(제1안) 85. 2. 4				
수신 : 내부 결재 <i>고시제 6-</i>				
제목 : 같은 것				
1. 감사 142-857 (84. 11. 13) 및 감사 142-2 (85. 1. 4) 호와 관련입니다.				
2. 급수공사 신청에 따른 수요가 부담 정액공사비와 신규 건축 허가시 반영하고 있는 일반주택의 비상저수조 설치 기준을 적용 운영함에 있어 현실여건에 맞지 않는 일부 불합리한 사례가 있어 법령과 같이 급수 공사의 정액공사비와 저수조 설치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개선 시행 조치 하오니 결재를 바랍니다.				
첨부 : 1. 급수공사 정액공사비 및 저수조 설치기준 조정안 1부 1985. 2. 04 2. 급수공사 사무취급 요령중 개정요령 공고안 1부 3. 급수공사 정액공사비 고시안 1부. 끝.				
(제2안) - 1772				

수신 : 강사담당관 - 87	발신 : 금수과장
제목 : 강사원 강사결과 따른 요구사항 조치 결과 통보	
1. 강사 142-857 (84. 11. 13) 및 강사 142-2 (85. 1. 4) 호와 관련입니다.	
2. 강사원 강사시 지적처분 요구된 아래사항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개선 시행키로 하였기 통보 하오니 업무처리에 참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가. 비상저수조 설치기준 합리적 조정	
나. 금수공사 정액공사비의 합리적 조정 고시	
첨부 : 1. 금수공사 정액공사비 조정안 1부	
2. 비상저수조 설치기준 조정안 1부. 끝.	
(제3안) 1985. 2. 04 수신 : 공보관 - 87	발신 : 금수과장
제목 : 시보 계재 의뢰	
1. 금수공사의 정액공사를 조정하고 금수공사 사무취급 요령을 개정하여 시행키로 하였기 별첨과 같이 시보 계재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금수공사 정액공사비 조정 고시안 1부	
2. 금수공사 사무취급요령 중 개정요령 공고안 1부. 끝.	
(제4안) 1985. 2. 04 수신 : 건축자재과 - 86	발신 : 금수과장
제목 : 비상저수조 설치기준 완화 조정	

1. 신규 건축 허가시 반영하고 있는 비상저수조 설치기준을 별첨과
같이 완화 조정 시행키로 하였기 통보하오니 건축 허가 및 준공검사 업무에
적극 반영 이행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2. 건축 허가 및 준공검사 관련부서와 기타 유관기관(주택행정과,
주택기획과, 재개발과, 구청 건축과, 구청 주택과, 주택공사, 건축 사업회등)
에 통보하여 저수조 설치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바랍니다.

첨부 : 비상저수조 설치기준 조정안 1부. 끝.

(제5안)

1985. 1. 14

수신 : 수신과장

참조 : 수도공사과장

제목 : 급수공사 정액공사비 및 저수조 설치기준 조정

1. 급수공사 신청에 따른 수요가 부담 정액공사비와 신규 건축
허가시 반영하고 있는 일반주택의 비상저수조 설치기준을 적용 운영함에 있어
현실여건에 맞지 않는 일부 불합리한 사례가 있어 별첨과 같이 급수공사의
정액공사비와 저수조 설치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개선시행키로 하였기
통보하니 이행에 착오 없도록 할 것.

2. 저수조 설치기준 완화 조정안은 건축 허가 및 준공검사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저수조 설치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첨부 : 1. 급수공사 정액공사비 조정안 1부

2. 비상저수조 설치기준 조정안 1부. 끝.

수신처 : 서구1-17.

1774

1985. 1.

금수공사 정액공사비 및 저수조 설치 기준 조정
= =



상 하 수 국

1775

= 급수공사 정액 공사비 및 저수조 설치 기준 조정

— 요 지 —

0. 시장지시사항 (84. 12. 상수도 급수실태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 공사비 과다로 급수신청기피

(조사대상 미급수 162가구의 38.3%)

- 영세민 급수공사 비용부담 경감 방안 강구

0. 감사원 지적 합리적 개선요구

- 조장도로 굴착복구를 수반하지 않는 비포장도로 지역도 정액

공사비에 포함된 도로복구비 부담시역 확장 시정

(변두리, 고지대 등 영세민 거주 지역 거의 비포장도로)

- 비상저수조 설치 기준을 현실여건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재조정

0. 개선내용

- 정액공사비 재조정고시 (조장도로 굴착복구 여부 구분)

- 기준수전의 구경화대 공사시 증가대상 건축면적을 기준으로

정액공사비 산정부과

- 비상저수조 설치 기준 완화 조정 (일반주택)

급수공사의 정액공사비 조정

1. 관련근거

0. 급수조례 제8조, 제9조, 제10조

0. 정액공사비 조정고시

- 세대당 또는 건축 단위 면적당 일정한 금액

0. 정액공사비 산출방법

- 계획 급수 지역내의 간선배관 및 수요가 인입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도로복구비, 양수기대금, 일반행정관리비, 수수료 등의 합계액

2. 현행 정액공사비

0. 고시 (제290호 (81. 8. 10)

(제112호 (83. 2. 25))

0. 정액공사비 (고시금액)

- 연건축면적 165㎡ 미만 : 290,000원
- 연건축면적 165㎡이상 : 1㎡당 1,800원

0. 정액공사비 산출 기초

구 분	산 출 금 액	비 고
기	290,000원	1979년도 이 시행된 급수공사
간선공사비	72,764 "	의 실제 소요공사비를 근거로
전용급수장치비	143,856 "	전문원가 조사기관인 산경회계
도로복구비	62,860 "	법인에서 원가계산에 의하여
일반행정관리비, 기타	10,520 "	산출된 평균 금액임.

* 165㎡ 이상건물 : $290,000원 \div 165㎡ = 1,800원/㎡$

3. 문제점

0. 포장도로의 굴착복구 일부에 불구하고 정액공사비 부과
0. 포장도로 굴착복구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비포장도로 지역도 정액 공사비에 포함된 도로복구비 부담하는 불합리 요인 발생
0. 번두리, 고지대등 임세면의 굴착비 부담과중으로 급수신청 기피
0. 기존수전을 설치 급수하고 있는 건축물의 경우 건물의 용도와 규모에 맞는 급수관 및 양수기의 구강복리공사시 정액공사비 이중부담 사례 발생
0. 감사원 감사시 지적 합리적 개선 요구

4. 개선대책

가. 정액공사비 제조정 고시

0. 급수공사시 포장도로의 굴착복구를 수반하는 지역과 수반하지 않는 지역으로 대별하여 정액공사비 구분 조정

0. 조정정책 공사비

구 분	정 액 공 사 비	
	포장도로 지역	비포장도로 지역
연건축 면적 165㎡ 미만	290,000원	227,200원
" 165㎡ 이상	1㎡당 1,800원	1㎡당 1,400원

4. 기준수전의 구경 확대공사시 증가대상 건축면적을 기준으로 공사비 산정부과

0. 기준수도전을 설치 금수하고 있는 건축물 시 신축 또는 증·개축 등의 사유로 건물의 용도와 규모에 맞는 금수관(양수기포함) 구경 확대공사시 기존건물 면적을 공제한 증가대상 건축면적을 기준으로 정액공사비 산정부과
0. 증가대상 건축면적이 165㎡ 미만인 경우 또는 건축면적의 증가가 없는 경우의 금수관(양수기포함) 구경 확대공사는 실제로 소요되는 공사비 산정 부과
0. 금수공사 사무취급 요령 개정

제3장 제1항 바호

= 정액공사비 산출 기초 (자조정내역) =

구 分	산 출 금 액		비 고
	포장도로 지역	비포장도로 지역	
기	250,000원	227,200원	
간선공사비	72,800	72,800	
전용금수장치비	143,900	143,900	
도로복구비	62,800	-	
일반행정관리비, 기타	10,500	10,500	

비상저수조 설치기준 완화 조정

1. 관련 근거

0. 시장 지시사항 제46호 (78. 5. 8)

- 비상용 수도물 적정량 확보 방안 검토하여 건축 행정에 반영

0. 시장방침 제1496호 (78. 5. 17) 및 제0664호 (83. 3. 18)

- 신규 건축 이가시 비상용 저수조 설치 의무화

- 기존주택은 저수조 설치 권장

2. 현행 일반주택의 저수조 설치 기준

0. 건평 85㎡ 미만 : 1.0㎥ 이상

0. 건평 85㎡ 이상 : 건평 1㎡ 당 15ℓ 이상

3. 문제점

0. 저수조 설치기준 용량 과다로 민원야기

0. 건축주의 비용부담 과중으로 저수조 설치 기피
(미설치 또는 시설미비, 용량 부족 등)

0. 소규모 연립주택의 저수조 설치기준의 관리상태 및 시설미비로 미활용
방지사례 발생

0. 감시원 감시시 지적 합리적 개선요구

- 저수조 설치기준을 현실여건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조 전하여
민원이 없도록 대책 마련
- 일정규모 미만의 주택은 저수조 설치대상에서 제외
- 저수조 설치의무가 없는 기존 건물에 대하여는 급수공사 승인등

4. 개선 대책

가. 일반주택의 저수조 설치기준 원화 조정

구 분 시설구 모	현 행	저수조 설치 용량		
		원화 조정안		
		1안	2안	3안
건평 35㎡ 미만	1.0m ³ 이상	0.5m ³ 이상	원형	원형 모양으로 가속 설치이 되
건평 85㎡ 이상	건평 1m ² 당 15ℓ 이상	건평 1m ² 당 15ℓ 이상	건평 1m ² 당 15ℓ 이상	지로 또는 비단 수 방식 관장

* 1안 — 저수조 용량을 축소 조정

2안 — 건축면적 협소한 소규모주택 저수조 설치권장

3안 — 단진, 단수등 비상시 용수 확보 대비

0. 제 안 쟈례

0. 신규 건축 이가시 반영

- 기존 건물은 저수조 설치권장

0. 구수공사 사무취급 요령 개정 (제4장 제5항 나호)

나. 개별 난방식 등 소규모 연립주택의 저아저수조 설치 지향

0. 옥상 또는 옥상보다 높은 위치에 저수조 설치 활용

- 자연유하로 간 세대에 상시 금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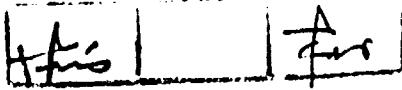
0. 민영주택 건설사업 입지식의 또는 건축설계식 반영

* 금수 445-126 (84. 4. 14)으로 지정 바쁜 각구에 기여 시달

서울

5/19/1

서 울 특 별 시 금 수 공 사 사 무 취 규



서 울 특 별 시 금 수 공 사 사 무 취 규 요령증 개정 으 3

서 울 특 별 시 금 수 공 사 사 무 취 규 요령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 제1항 번호 1)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존 주도전용 가정, 수신, 전기동의 공

단면, 기존 건물 면적을 제외한 종축 연면적 165㎡ 이상인 건물의

급수관(양수 기포함) 구경 확대공사는 종축 연면적을 기준으로 정액

공사를 산정 부과한다.

제4장 제5항 나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비상용 저수조 설치기준은 아래와 같다.

0. 주택 (85m^2 미만) : "1 m^3 이상"을 "

"로)

(85m^2 이상 : "1 m^3 당 15ℓ"을 "

"로)

부
식

이 요령은 1985. 2. 1. 부터 시행한다.

서 울 특 별 시 장

서 울 특 별 시 고 시 제

오

189

5/19 26

금수공사 정액공사비 및 실시 지역

서울특별시 금수조 제8조 내시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수공사 정액공사 비와 정액금수공사 실시 지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5.

서 울 특 별 시 장 임 모 현

1. 실시일시: 1985년 2월 16일부터 시행
2. 실시지역 : 서울특별시 금수 가능 지역 전역
(단, 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 제외)
3. 대상 : 금수를 신청하는 건축물
4. 정액공사비 내용

구 분	정 액 공 사 비	
	포장도로골착복구 지역	비포장 도로/지역
연건축면적 165㎡ 미만	290,000원	227,260원
연건축면적 165㎡ 이상	1㎡ 당 1,800원	1㎡ 당 1,400원

- 실제 공사비가 정액공사비의 150% 이상 초과될 시에는 당시 금수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초과 소요 비용을 정액공사비에 가산 징수 함.
- 시설분당공은 별도로 가산됨.

5. 특정 지역

0. 금수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비금 수요 기에서 특별히 부담하여야 할 지역은 다음과 같다.

- 종로구 명창단지 및 주변표고 125m 이상 지역
- 구로구 식흥동 3번지 법원단지 일대

0. 도면은 관할구청 수도공사과에 비치

6. 공사비 납부 방법

0. 공사비는 금수신청후 납입고지서에 의거 공사 시행전에 납부하여야 함.

